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회의(2009년 12월 3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가.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구민 1인당 보험료는 약 420원이며, 총 보험료는 176,400천원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보장내용은 보험약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부칙에 자전거 보험가입 조항의 신설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4. 審査結課：原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53 호
----------	---------

제출연월일 : 2009.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자전거이용자 급증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전거 보험가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제18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예산확보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2) 입법예고('09.10.5 ~ 11. 4)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사무 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6조의2(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